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284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10월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40,600백만원 기금 확보 예상 시점이 당초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도 상반기로 변경됨
 -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협약에 따른 기금 납부 시점(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로 변경
- 나. 기금 확보 시점을 반영하여 2024년 지출계획상 예치금을 0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4년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변경 (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40,600	-	△40,600 (100%)
세외수입		40,600	-	△40,600 (100%)
임시적세외수입		40,600	-	△40,600 (100%)
기타수입		40,600	-	△40,600
그외수입		40,600	-	△40,600

- 2024년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 초 (A)	변 경 (B)	증감(B-A) (증감률)
계			40,600	-	△40,600 (100%)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공공시설등설치기금)			40,600	-	△40,600 (100%)
	여유자금 예치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일반예치금	40,600	-	△40,600 (100%)

Ⅲ.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조의2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 당초 '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금(2,030억원) 예상분중 406억원²⁾을 동 기금에 수입계획하고,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지출 계획한 것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 제1항 제8호의2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제36조 제1항 제1호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건축법」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5회 분할납부를 가정한 금액이며, 향후 서울시·사업시행자 협약체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울시, 중구, (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하 “사업시행자”)이 체결한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서」에 따르면 기금재원의 최초납부시기를 착공신고필증 발급일(착공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당초 수입 및 지출계획에 편성한 것이나,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착공 예정일이 '24년 9월에서 '24년 11월로 변경되어 “착공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정한 협약서에 따라 기금재원의 납부 시점을 '25년도 상반기로 변경하고, 「지방기금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 시의회가 당초 의결한 동 기금의 수입계획중 **그 외수입** 전액(406억원)을 감액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406억원)도 전액 감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표 3-1〉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 출 합 계		40,600	0	△40,600	△100.0
재무활동(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40,600	0	△40,600	△100.0
보 전 지 출 (공 공 시 설 등 설 치 기 금)		40,600	0	△40,600	△100.0
여유자금 예치(공공시설등설치기금)		40,600	0	△40,600	△100.0
예 치 금		40,600	0	△40,600	△100.0
일반예치금 □ 공공기여 비용 예치		40,600	0	△40,600	△100.0

※ 자료근거 :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예치금기금운용계획중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지출계획
②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4.10.16)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³⁾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당초 지출계획액 전액인 △406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중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납부시기가 지연되어 당초 수입계획을 감액하고, 지출계획도 이와 연동시켜 감액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향후 동 기금에 대한 수·지 결산시 ‘재원없는 허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2024년 지출계획 변경내용”에는 시의회로부터 당초 의결받은 정책사업(재무활동)명이 아닌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공공시설등설치기금)”으로 기재하여 제출된 바, 향후에는 정책사업명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